■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0. 5. 28.>

도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가축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도태 명령의 내용	도태 이유						
	대상 두수				이행기간		
도태 명령 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 번호	특징	비고
도태 지정 출하시설	시설(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제2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태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위의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된 가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태(도축·재활용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1. 도태 실시 시설명:
- 2. 도태 두수: 두
- 3. 도태 실시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제2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도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5호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